



진실(참)
용감(힘)
봉사(덕)

가정통신문

<http://www.wonkwang.hs.kr>

원광고등학교

전북 익산시 무왕로 31길 139
TEL (063) 832-6612
FAX (063) 832-6296

담당부서	학생생활안전부	담당자	이○○	연락처	063-830-1439
------	---------	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

제 2023-140호

2023학년도 2학기 학부모/학생 학교폭력예방교육

안녕하십니까? 본교의 교육 활동에 협력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자녀들에게 더욱 알차고 참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과 지도 또한 꼭 필요합니다.

지난 4월에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변경사항 및 이번 9월 1일에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■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변경사항 (23. 4. 12.)

1.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6호(출석 정지), 7호(학급 교체), 8호(전학 처분)를 받은 학생은 **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**이 2년에서 **4년**으로 연장됨
2.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**2026년 대학입시부터 수시와 정시에 의무 반영**
3. 18개 시도 교육청에 **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**를 설치 운영

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정 사항 및 주요 내용 (23. 9. 1.)

개 정 사 항	주 요 내 용
■ 피·가해학생 분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가해자 분리 기간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변경 ②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2호(일시보호) 또는 제17조제4항 제5호(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) 및 제6호(출석정지)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면 분리 기간 자동 종료
■ 가해학생 학적 변동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점부터 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 완료 시점까지 학적 변동 제한이 원칙이나 ② 2023.9.1.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전학 조치(8호)를 받은 경우 우선 전학하게 됨(※7일 이내 학교장이 배정받을 학교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함.) ③ 전학 조치 외 부과된 기타 가해학생 조치(사회봉사,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)는 전학 전 원적교에서 일부 혹은 전학 후 전출교에서 이행 완료
■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(신설)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 측에게 가해학생의 ‘불복사실’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변경. (교육장). ‘심판·소송 참가’를 통해 의견 제시가 가능함. ② 가해학생의 불복 주장에 대한 피해 학생의 진술권 보장 목적
■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영역 수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가해학생 조치사항 7호 학급교체 기재가 출결사항 특기사항에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변경 ② -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 : ▶1호(사면사과) ▶2호(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) ▶3호(학교에서의 봉사) ▶7호(학급교체) - 출결사항 특기사항 기재 : ▶4호(사회봉사) ▶5호(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) ▶6호(출석정지) - 인적(학적)사항 특기사항 기재 : ▶8호(전학) ▶9호(퇴학처분)

2023년 9월 13일

원광고등학교장